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14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강재웅, 이준상

피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주로펌

담당변호사 최국신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가람

변론 종결2022. 10. 27.

판결 선고2023. 1. 19.

주 문

1. 가. 피고 B과 주식회사 D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주식회사 D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의 채권 양도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하고, 아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5. 6. 2. D(2015. 5. 26. 'F'이라는 상호로 설립 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6. 18. 'G'로, 2015. 12. 3. 'D'로 순차적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에 이자율을 연 9%로 정하고, D 발행주식 3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2,511,600뉴질랜드 달러를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D과 체결하고, 2015. 6. 5. 858,000뉴질랜드 달러, 2015. 6. 15. 390,000뉴질랜드 달러, 2015. 6. 25. 1,263,600뉴질랜드 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2) E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 원리금 합계 2,861,707,261원(= 원금 1,953,383,796원1) + 이자 908,232,465원) 및 그중 원금 1,953,383,79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0. 27.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61807), 위 지급명령은 2020.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E는 2021.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D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2) 위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고, 원고는 2021. 5. 3. E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E의 대리인으로서 D에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1. 5. 4. D에 도달하였다.

나. D의 H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

1) H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6. 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가칭 H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D과 2015. 6. 22. 대여한도를 100억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15. 6. 23. D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이 D에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채무액은 2018. 12. 6. 기준으로 2,004,456,985원(= 원금 1,814,433,592원 + 이자 190,023,393원)이다.

다. D의 채권 양도

1) 이 사건 조합과 D은 2018. 12. 5. J 및 피고들(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8. 12. 6.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K 등부 2018년 제4186호로 인증받았다.

1. D의 채권자 및 채권액(1,151,500,000원)

채권자1: J(금액 300,000,000원정)

J(금액 200,000,000원정)

채권자2: 피고 C(금액 200,000,000원정)

채권자3: 피고 B(금액 451,500,000원정)

2. D의 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외 부지(이하 "교환 토지" 약 2,983m²: 광주광역시 북구 (표시 생략)

3. 이 사건 조합은 D의 채무자로서 위 제1항 D 채권자인 피고들 등 3명에게 이 사건 조합(조합장)

소유의 제2항 토지를 제1항의 금액으로 평가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단1) D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권리 중에서 위 1항 금액인 1,151,500,000원을 직권 공제하라는 D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통해, 조합의 의결절차를 득하는 조건으로 하되, 두 조건의 흠결 발생 시 본 확인서는 무효화하기로 한다.

단3) 이 사건 조합은 위 제3항 단1)항 내지 단2)항의 문서를 받으면, 필요시 조합 이사회 내지 조합원 의결절차를 거친 후 제2항의 소유권을 위 제1항 채권자 1, 2, 3(피고들 등을 의미한다) 각각을 공동명의로 하여 이전해주기로 한다.

단6) D에서 위 제1항 각각의 채권자들(피고들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조합(조합장) 소유의 토지를 대위 지급하는 방법 이외 현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에 대한 D의 공식적인 문서가 있으면, 위 제1항 각각의 채권자들과 협의 후 이 사건 조합의 절차에 의거 그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4. 본 건의 정상적인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제1항 D과 채권자들, D과 이 사건 조합, 위 제1항 채권자들과 이 사건 조합과의 관계는 본 확인서 작성 이전의 권리·의무 관계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2) D은 2018. 12. 6.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 중 5억 원을 J에게, 451,500,000원을 피고 B에게, 2억 원을 피고 C에게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과 피고들 등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도인 D(이하 '갑')과 양수인 피고들(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채권)

1. 양수도 대상 채권의 세부 내역

이 사건 조합(이하 '병')	광주 북구 L	451,500,000(피고 B)200,000,000(피고 C)
-----------------	---------	------------------------------------

2. 대상 채권은 병이 갑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차입한 채무금 잔액

451,500,000원(피고 B), 200,000,000원(피고 C)에 수반되는 인적, 물적 담보를 포함한 기타

부수되는 권리 일체

3. 양수도 대상 채권에 대한 원금과 그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양수도대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양도한다.

제3조(양수도 가액 및 대금의 지급)

1. 양수도 가액은 451,500,000원(피고 B), 200,000,000원(피고 C)으로 한다.
2. 대금의 지급은 본 계약 체결일에 을은 일시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제4조(채무상환의 완료)

본 계약은 첨부된 서류 #1. 확인서(등부2018년 제4186호)(이 사건 확인서와 같다)에 의한 병의 사업외 부지 약 2,983m²의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채권양수도에 의한 채무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D은 2019. 8. 28. 이 사건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9. 8. 30. 이 사건 조합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의 채권 추심

1) 피고 B과 이 사건 조합은 2022. 4. 8.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을 5억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 B은 같은 날 1억 1,000만 원, 2022. 5. 31. 3억 9,000만 원을 각 추심하였다.

2) 피고 C과 이 사건 조합은 2022. 8.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을 2억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2억 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2, 24, 50, 51호증, 을가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E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미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데도, 원고는 2021. 2. 9.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갑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의 대표자인 M이 사해행위취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가합3094)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 D,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는 원고의 부친인 N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기 전 M과 이 사건 조합장 O이 N와 함께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도 N에게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4, 6, 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대표자는 P, D의 대표자는 M으로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자인 E가 2018. 12. 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D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E, D,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N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송신탁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와 E 사이에 채권양수도계약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E의 원고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그러나 ①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6.부터 2019. 7. 16.까지 뉴질랜드 법인인 Q(이하 'Q'라 한다)에 합계 1,158,499뉴질랜드 달러 외화 송금 발신 및 자본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E가 원고에게 소송신탁을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5. 3. 원고가 D에 대여금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1. 1. 5. D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E의 2021. 1. 5.자 채권 양도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채권 양수도계약서(갑 제5호증)에 양수도 대상이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61808호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의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원고로 하여금 E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원고적격 흠결 주장에 관하여

피고 C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실제로 그가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와 D의 대표자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의 당사자란에 서명하였고, 위 계약서 본문의 대여금액을 '10억 원'에서 '2,511,600뉴질랜드달러'로, 이자율을 '연 4%'에서 '연 9%'로 수기로 수정하면서 이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들은 원고가 E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61808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아니므로 D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2021. 1. 5.자 채권 양도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채권 양수도계약서(갑 제5호증)에 양수도 대상이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 161808호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의 오기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5. 3.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D에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대여 원리금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5. 3. E의 대리인으로서 D에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21. 5. 4. D에 도달하였으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설령 E와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원고는 위 대여 원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상태 여부 갑 제9 내지 14, 25, 30, 32, 내지 43, 47, 4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8. 12. 6. 기준으로 D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831,289,05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2018. 12. 31. 기준 자산 총계 5,568,489,716원을 초과한다. 피고들은 2018. 12. 31. 기준 부채 총계가 4,633,971,462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2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E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무	2,599,789,050원3) 원금 1,953,38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8. 12. 6.까지 연 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606,405,254원
2	J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00원
3	피고 B에 대한 채무	451,500,000원
4	피고 C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5	S회사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4) 갑 9호증, 3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S회사에 대한 채무가 5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법원의 R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따라 5억 원만을 채무로 인정한다.
6	T회사에 대한 채무	128,000,000원
7	U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8	V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1	E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무	2,599,789,050원3) 원금 1,953,38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8. 12. 6.까지 연 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606,405,254원
9	W에 대한 채무	34,000,000원
10	X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11	Y회사에 대한 채무	44,000,000원
12	Z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13	AA에 대한 채무	230,000,000원
14	AB에 대한 채무	600,000,000원
15	AC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16	AD회사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17	AE에 대한 채무	60,000,000원
18	AF에 대한 채무	24,000,000원
19	주식회사 AG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합계	5,831,289,050원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이 D의 AC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AC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은 D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9호증(광주지방법원 2019차3670 지급명령)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의 AC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은, T회사, U, AC, AD회사, AG은 2017. 12.경 또는 2018. 1.경 D로부터 대여금을 상환 받는 대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D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1, 40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자들 중 일부는 위 합의 이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D로부터 D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거나, D을 상대로 금전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합원 지위 양수에 관한 합의가 D의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조합원 지위 양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의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은 위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들에게 처분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D의 재산·채무상황,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D은 위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일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사해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특히 대물변제는 그 자체로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변제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가 보유한 채권을 일부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대물변제로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와 다른 재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만 할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여타의 대물변제 일반이나 담보제공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은 2018년경 폐업상태에 이르러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② 피고 B은 2015. 7.경부터 2018. 7.경까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D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이 피고 B 등과 함께 D,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고, 곧바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의 변제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피고 B은 50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임태혁

판사김민석

판사김다운

별지

1) 2,511,600뉴질랜드 달러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2) 다만 채권 양도 통지서 및 이에 첨부된 채권 양수도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양수도 대상을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61808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대여 원리금 채권으로 기재하였다.

3) 원금 1,953,38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8. 12. 6.까지 연 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606,405,254원

4) 갑 9호증, 3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S회사에 대한 채무가 5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법원의 R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따라 5억 원만을 채무로 인정한다.